

평택 청북지구 풍림아이원 입주자 모집 공고

■ 평택시는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 분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일로부터 10년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건축과 - 17716 (2008.6.26.)로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역지개발지구 10블럭 ■ 대지면적 : 13,817.00㎡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15층, 아파트 5개동 총 2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 단위 : ㎡, 천원 >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대 지 분	공급 세대	층별 (총)	개별 세대	총 분양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평택시	수도권			세대별공급면적			계	계약금(5%)						계약금(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용	주거공용	소개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민 영 주 택	21992-01	21993-01	2008000604 (01)	112.4001	84.7870	27.6131	112.4001	41.3731	153.7732	58.1780	88	1층	5	202,000	10,100	10,100	20,200	20,200	20,200	20,200	20,200	20,200	60,600	
												2층	5	204,900	10,245	10,245	20,490	20,490	20,490	20,490	20,490	20,490	20,490	61,470
												기준층	72	207,400	10,370	10,370	20,740	20,740	20,740	20,740	20,740	20,740	20,740	62,220
												최상층	6	214,500	10,725	10,725	21,450	21,450	21,450	21,450	21,450	21,450	21,450	64,350
	21992-02	21993-02	2008000604 (02)	112.4381	84.8157	27.6224	112.4381	41.3869	153.8250	58.1980	144	1층	6	200,900	10,045	10,045	20,090	20,090	20,090	20,090	20,090	60,270		
												2층	10	205,000	10,250	10,25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20,500	61,500	
												기준층	118	207,500	10,375	10,375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20,750	62,250
												최상층	10	214,000	10,700	10,7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21,400	64,200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경기도 평택시는 2003.6.7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층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도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상기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 아파트는 2007.9.1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 상기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10년간 분양권 전매 및 매매가 제한됨.
-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률이 30%이상이어야 함)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수납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 공유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

■ 청약시 유의사항

-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은행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무주택세대주)
 -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단체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 자 -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 공급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의 의함) 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

▶ 일반공급 232세대 중 10%인 26세대(전주택형)

구 분	112.4001	112.4381	합 계
경 기 도	5	8	13
서 울 시	4	6	10
인 천 시	1	2	3
공급세대	10	16	26

- * 공급기준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7.01(화) (10:00 ~ 15: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7.01(화) (15:30), 당사 견본주택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구비서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기타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초본1통(주소이전,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인정증명서" - 장애인인정증명서는 거주지관할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신청서(모델하우스 비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2. 3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6.27)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이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청금지 적용자는 제외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해당청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공급세대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의 의항)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

▶ 일반공급 232세대 중 3%인 11세대(전주택형)

구 분	112.4001	112.4381	합 계
경 기 도	2	3	5
서 울 시	2	2	4
인 천 시	1	1	2
공급세대	5	6	11

- * 공급기준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7.01(화) (10:00 ~ 15:00),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7.01(화) (15:30), 당사 견본주택
-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추후 부적격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정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우선순위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함.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자녀 이상	10		
		1자녀	5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③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⑤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⑥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⑦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⑧ 신분증 ⑨ 인감도장 ⑩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 분)
- ⑪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3. 일반공급

1) 공통사항

- * 본 주택은 대규모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평택시에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2007.06.26 이후 평택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6.27)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평택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평택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 계좌 재사용이 불가능함
- *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 동일 순위자중 경력이 있을 경우 평택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 1순위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구분 (전용면적)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 위 특별공급 또는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평택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08. 07.01 (화)	당사 견본주택 (10:00~15:00)	- 발표일시 : 2008년7월1일 16:00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가정제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분		2008.7.2 (수)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2you.com	- 발표일시 : 2008년7월10일14:00시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08년7월10일 아주일보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전주택형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범위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80. 8. 29이전 국민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 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 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참조)					
2순위	가정제	• 2순위 청약자 전원	2008.7.3 (목)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시간 08:30~18:00		
추첨제	• 해당사항 없음 (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전주택형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 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7.4 (금)	-우리은행 본·지점 - 시간 : 9:30 ~ 16:30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접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정제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3)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2002. 9. 5 가입자 포함)
-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4)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①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예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횡수
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②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안내

1.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우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④감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됨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②+③) - ④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8.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4)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신청접수방법

1. 신청기준

- * 공통: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평택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청약순위에 따른 일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 1.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가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2. 인터넷 · ARS · KB모바일 신청접수

- * 평택청북지구 인터넷 청약에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분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FI폰 기준만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 분양관→ 사이버청약자점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MBank접속→KB Starnet→모바일주택청약→PIN입력→ 주택청약 신청 ▶ KTF, LGT: KB뱅킹 접속→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주택청약 신청	-

3. 노약자·장애우 등 청구접수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 (1, 2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강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강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강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4. 3순위 청약 신청 및 환불

* 청약신청금

구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07.11) 이후 (평일 09:30 ~ 16:30, 토, 일요일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 지점(단, 청약자 본인의 해당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신청시 사용한 인강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①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강증명서 (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청약자의 인강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인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③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위임장
- 제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 지정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3자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하며 가정제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선정방식도 위와 동일함 · 주택형별로 공급호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예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ARS,모바일 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8.7.10 ~ 2008.7.19(10일)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금융결제원(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8.7.10 ~ 2008.7.19(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7.10 ~ 2008.7.19(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8.7.10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2008년 7월 16일 ~ 7월 18일(3일간) / 평일 09:3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당사 건본주택에서 직접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2.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월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여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정제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후첨제 1순위 당첨자는 2주택 이상) 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입된 자 또는 기입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해당형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사실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계약금 납부계좌 및 방법

주택명(시공사)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평택 청북지구 풍림아이원(풍림산업)	우리은행	1005-599-000011	명성씨엔아이(주)	계약금입금계좌로 입금후 입금표 지참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및 관련 절차

1. 입주예정일 : 2010년 6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통보 예정)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입금은 인정하지 않음

2.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건설 교통부 입주자 사전 점검 요령에 의거 점검)

-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에 대해서 입주개시 1~2개월 전 특정일자를 지정,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교육,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여부 확인
- 사전점검에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사전점검일 이전에 별도 통보 예정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 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연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 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 보유 특례)

1.(현재: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현재:무주택)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상가 등

■ 용자안내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 사 건물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 당사업자는 총분양금액의 40%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 시행자 및 시공자의 연대보증으로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잔금 정산시 연대보증의 해지업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절차를 지정법우사를 통하여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일부재외 확장 공사비 금액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05.12.02 개정·시행)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위치	확장면적(㎡)	확장세부품목	금 액
112.4001㎡형	주방	10.2864	강화마루, 주방가구증가(키큰장,아일랜드가구추가, 길이증가), 외부샤시등	2,766,000
	거실	6.0630	전동커튼, 아트월, 도배, 강화마루, 외부샤시, 거실발코니측 도어 등	2,781,000
	침실1	3.7797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등	1,115,000
	침실2	3.7410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등	1,016,000
	안방	3.0784	전동커튼, 외부샤시, 전동빨래건조대 등	1,776,000
	드레스룸	3.1328	강화마루, 드레스룸가구, 외부샤시 등	2,549,000
	현관	3.7440	바닥타일, 도배, 외부샤시,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등	1,697,000
	소계	33.8253		13,700,000
112.4381㎡형	거실	9.5303	전동커튼, 아트월, 도배, 강화마루, 외부샤시 등	2,388,000
	침실1	4.4400	전동빨래건조대,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등	2,942,000
	침실2	4.6001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등	685,000
	안방	5.3277	전동커튼, 강화마루, 도배, 외부샤시 등	1,699,000
	대피소		외부샤시	661,000
	발코니4		외부샤시	725,000
		소계	23.8981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구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일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확장 대상 발코니 위치는 건본주택 방문시 확인 바람. * 상기 금액은 발코니 확장시 기본사양 적용 금액이며, 이외 추가 옵션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목 및 가격은 건본주택 방문시 확인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등복세,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 발코니 확장공사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지하층 구조공사 완료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공동주택의 별도계약 품목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확장여부	품 목	금 액
112.4001㎡형	확장시	거실주방 바닥	2,163,000
		불박이장	2,553,000
	비확장시	거실주방 바닥	1,432,000
		불박이장	2,235,000
112.4381㎡형	확장시	거실주방 바닥	2,127,000
		불박이장	2,436,000
	비확장시	거실주방 바닥	1,680,000
		불박이장	1,795,000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상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에 대한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면적 중 코어 면적은 각동의 코어 면적을 합산한 후 세대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임.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복리동 및 경로당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스크린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측정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수경시설, 조정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일부 등 주변 및 단지 외곽부, 단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화장실 및 주방배기를 위한 무동력 팬이 설치가 됨. (전시 모형 및 CG등 미표기)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 (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 (입면, 색채, 재질, 간판위치, 조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명 및 등, 호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등 및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해당 시설출입구가 인접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이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관리비가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샤시를 개별 시공시 전체의 통일된 입면을 위하여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샤시와 같은 디자인, 재질, 색채, 형태에 맞춰 설치를 권고함.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카다로그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확장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시공 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 경계 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카다로그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중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 방법: 평형면적(㎡) × 0.3025 또는 평형면적(㎡) ÷ 3.3058)
- 카다로그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다로그에 명기된 치수는 안목치수이며 건축법상 허용되는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확장시 설치되는 발코니 사시(복층유리 이중창호)는 실시공시 성능 및 구조 검토를 통해 동질수준 이상의 다른 창호로 변경될 수 있음.
- 1~2층 또는 3층 세대의 경우 입면에 따라 발코니 외벽 일부가 들출되어 마감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층수 및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확장세대의 상부세대에서 발코니 비확장 시 거실 발코니부분의 우물천장 길이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강제 환기설비시스템이 설치되며 3~10층에는 피난용환기기가 설치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사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 확장되는 발코니는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로 인해 벽체 두께가 변경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 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에 의해 체결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자재의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비확장 세대)로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 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
- 각 세대 단위세대 발코니의 수전위치 및 바닥레벨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구조 및 형태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 주방용 배기 덕트, 세대환기 덕트가 노출되며, 이를 위한 커버가 설치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앞선시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함.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채우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기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공사의 이행을 말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해당첨금지 등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북택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은 학교신설 교부금 미 배정 및 경기도 학교용지 매입비 미 전입에 따른 교육재정의 악화로 입주시기에 맞춘 학교설립이 불가능함. 다만, 2008년 4월 현재 중앙부처에서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분담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정 중에 있는 바, 동 택지에 마련된 학교용지는 향후 중앙부처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청북택지구내 초,중학교의 학교설립은 2008년도 학교설립예산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2010년 개교가 불가함. 다만, 2009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 예산에 청북지구 학교 설립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2011년 3월 개교 가능할 것이나, 개교시점보다 입주시점(2010년 2학기 중)이 먼저일 경우 통학구역 및 학구(군) 조정을 통해 인근의 기존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임.
- 청북택지구내 초,중학교의 학교설립 이전에 인근 기존학교를 이용할 경우 도보로 등,하교하기에 곤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생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구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칭 청북지구공동주택사업추진협의회) 부담의 통학버스를 초,중학교 개교 이전까지 임대 운영할 것임.
- 보증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당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후 가능함.)

■ 감리회사 및 금액

(단위:원)

구 분	회사명	금액	비고
건 축	(주)유성건축사사무소	550,291,845	VAT별도
전 기	(주)오성디이씨	105,000,000	VAT별도
통 신	(주)오성디이씨	26,000,000	VAT별도
소 방	(주)남도티이씨	72,500,000	VAT별도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33,694,290,000원	제 01222008-101-00035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대한주택보증(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 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채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이 주택은 「주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3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0 불록(천원)	3.3㎡당 단가(천원)	비 고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합 계	48,134,700	6,101		
	택 지 비	9,025,682	1,144		
	건 축 비	직접공사비	18,179,556	2,304	
		간접공사비	5,646,860	716	
		설 계 비	403,021	51	
		감 리 비	753,792	96	
		부 대 비	2,793,943	354	
		가 산 비	11,331,846	1,436	

* 상기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서, 준공시 소요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사** : 명성씨앤아이(주) 대표이사 김 창 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대평프라자 203호)

■ **시공사** : 흥림산업(주) 대표이사 이 필 승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500-16번지 일원

■ **건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 : cheongbuk.poonglimiwant.co.kr

■ **분 양 문 의** : 흥림 산업 : 1577-5563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건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